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55
------	------

2022. 3. 29.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9일, 정진술 의원(찬성의원 34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3.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진술 의원)

### 1.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은 삭제가 되었는바, 이에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10조 등).
-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6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근거 법률명과 조문, 위원회 명칭과 기능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발의되었음.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기본 사항(총칙, 제1장)부터 경비 부담(제2장), 지방보조금(제2장의2), 예산(제3장), 재정분석·공개(제5장), 긴급재정관리(제5장의2), 채권·부채의 관리(제9장·제10장) 등 다양한 재정분야의 관리·운영 원칙을 규정하여 왔음.
- 이 중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한 법률 규정이 미흡해 상당 부분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저해되어 왔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불명확한 사항을 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이로 인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교부절차,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의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을 제정(2021.1.12, 시행 2021.7.13)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하였음.
-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별개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법 체계 >**

조항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1), 정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3)
제2장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	시·도비 기준보조율(§3), 예산 계상 신청(§5), 예산 편성 및 운영(§6)
제3장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	교부 신청(§7), 교부 결정(§8), 교부 조건(§9), 교부 결정 통지(§10), 교부 결정의 취소(§11·§12)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용도 외 사용 금지(§13),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과 인계(§14·§15), 수행 상황 점검(§16), 실적 보고(§17), 회계감사(§18), 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19), 시정 명령(§20), 재산 처분의 제한(§21), 중요재산의 부기등기(§22)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이의신청(§23), 별도 계정의 설정(§24), 신고포상금 지급(§25),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26),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27),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28), 검사(§29), 명단 등의 공표(§30)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지방보조금의 반환(§31),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32),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33), 지방보조금 환수(§34), 제재 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35), 강제 징수(§36)
제7장 벌칙	벌칙(§37~§39), 양벌규정(§40)

## 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지방보조금법」으로 재편된 사항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령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음.

### < 근거 법령명과 조항 변경 관련 규정 >

조항	현행	개정안
제1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②	법 제32조의2제2항	법 제6조제2항
제10조①	법 제32조의3	법 제26조
제11조①	법 제32조의2 제3항	법 제26조제2항
	6.법 제60조	6. 「지방재정법」 제60조
제19조①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24조	법 제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제32조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4조①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4조②	법 제32조의9제3항	제21조제3항
제35조①	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제60조

- 또한, 종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법」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부정사용자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음.

**< 위원회 기능 확대 규정 >**

현행	개정안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p align="right">&lt;신설&gt;</p> 5. (생략) <p align="right">&lt;신설&gt;</p>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7. · 8. (생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 ----- -----. 1. ~ 4. (현행과 같음) <b>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b> 5. (현행과 같음) <b>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b> 6. 「지방재정법」 제60조----- -----. 7. · 8. (현행과 같음)

- 아울러, 안 제36조는 「지방보조금법」에 맞춰 조의 제목과 내용을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으로 변경하고, 안 제37조는 이의신청 대상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을 추가하였음.
- 이 밖에 안 제4조와 안 제12조는 띄어쓰기, 오탈자 등의 문구상 오류를 정비하고 있음.

**< 문구 정비 관련 규정 >**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 -----.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 제11조에 따른 ----- -----.

- 한편, 부칙 제2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조례에서 보조금 근거 법률로 「지방재정법」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보조금법」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일괄 정비하였음.

##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지방보조금법」의 제정·시행에 맞춰 근거 법령과 조문, 새로 신설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해 관계법령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임.
- 안 제2조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각각 삭제하고 「지방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일괄 정비한 바, 이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시행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조례상에 법률과 다른 정의를 두는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됨.
- 다만, 입법의 편의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현행처럼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lt;신 설&gt;</b></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p> <p>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p> <p>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p>

- 이 밖에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시비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계상이 가능한 예외 사항(제5조제2항),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제7조제2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그 밖에 취소 사유(제12조제1항), 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된 신고포상금(제25조)과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공개(제30조),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제26조제12항)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구)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 관련 조문대비표>

(구)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p>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p>	<p>제4조(시·도비 기준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u>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u> 다만,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p>
<p>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⑥ <u>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p>	<p>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u></p>
<p>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p>	<p>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p>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 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5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09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혜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송도호,  
송아량, 양민규, 유 용,  
이광호,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임종국,  
전석기,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 및 운영성과 제고를 위해 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명시되었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은 삭제가 되었는바, 이에 상위 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10조 등).
-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2조의2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자치구청장”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3”을 “법 제26조”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 제3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을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를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로, “지방보조금에”를 “지방보조금의 교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제5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각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및 제3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 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

제4조(보조대상) -----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6조제2항-----

③ (현행과 같음)

④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자치구 부담 경비의 협의) -----

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 ⑥ (생략)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신설>

6.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7.·8. (생략)

-----  
--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법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제60조-----

7.·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②·③ (생략)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24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등) ① ----- 제11조에 따른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 법 제7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경우를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교부방법) -----  
-----  
-----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  
-----  
-----

수 있다.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

-----.

제32조(성과평가) ① ----- 법 제27조 및 법 시행령 제16조-----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  
-----  
-----  
-----  
-----  
-----  
-----  
-----  
-----.

② -----  
-----  
-----  
-----

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

-----  
----- . ---- 법  
제21조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  
-----

